

창원지방법원 2024. 5. 10 선고 2024가단101103 판결 [사해행위취소]

## 전 문

원 고 1. A

2. 주식회사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형석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4. 4. 12.

판 결 선 고 2024. 5. 10.

## 주 문

-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D 사이에 2023. 2. 2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D에게 별지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을 것과 그 채권자에게만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다47106, 47113, 47120 판결 참조).

그런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2019. 3.경 D에 대하여 전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D은 2023. 2. 21.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별지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규도

별지